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과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

이명곤* / 장석진** / 조상민***

- | | |
|----------------------|----------|
| I. 서론 | IV. 분석결과 |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V. 결론 |
| III. 연구설계 | |

개요

본 연구는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으로 분류되는 국제회계기준(IFRS)이 우리나라에 전면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국내 상장기업의 감사인이 추가적으로 감사시간을 투입하고 이에 대한 감사보수를 청구하는지를 분석한다. 과거 규정중심의 기업회계기준 하에서와는 달리 IFRS의 도입으로 인해 감사대상회사의 회계처리 선택범위가 넓어지고 이익조정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따라서 감사인은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시간을 추가로 투입하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감사보수를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IFRS가 도입되기 이전 연도인 2009년과 IFRS가 도입된 이후 연도인 2011년의 거래소상장기업과 코스닥상장기업을 연구표본으로 선정한다. IFRS의 조기도입으로 인한 효과가 연구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고자 2010년은 분석기간에서 제외한다. 감사시간과 감사보수가 2009년에 비해 2011년에 높게 나타난다면, 본 연구의 가설이 지지된다고 할 수 있다.

분석결과, 감사인은 IFRS 도입 이후 감사시간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규정중심의 기업회계기준에서 원칙중심의 IFRS 도입으로 인하여 감사대상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회계처리의 범위가 넓어지고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상황으로 인해 감사인이 감사시간을 추가적으로 투입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시간과 동일하게 IFRS 도입 이후 감사보수도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였으나,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경우 IFRS의 도입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감사인은 IFRS 도입 이후 감사시간을 추가로 투입하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받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IFRS 도입 이후 감사시간당 감사보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감사시간,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당 감사보수의 차이변수(Change Variable)를 이용한 분석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IFRS 도입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은 자유수입제 이후 감사인 간의 경쟁이

*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주저자), E-mail : leemg@hanyang.ac.kr

** 한양대학교 회계학과 석·박사통합과정(교신저자), E-mail : seokjin3@hanyag.ac.kr

*** 한양대학교 회계학과 박사과정 겸 신우회계법인 공인회계사(공동저자), E-mail : chosmcpa@yahoo.co.kr

투고일(2012년 7월 2일), 1차수정일(2012년 9월 19일), 2차수정일(2012년 11월 7일), 게재확정일(2012년 11월 19일)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감사시간당 감사보수가 IFRS 도입 이후에 감소한다는 결과는 회계기준변경으로 인한 감사투입시간의 증가에 비해 감사보수의 청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감사인 간의 경쟁으로 인하여 회계기준의 변경으로 인한 감사투입시간의 증가가 감사보수의 인상으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기존의 선행연구는 감사대상회사의 개별적인 특성이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는 회계기준변경이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또한 본 연구는 미국, 일본 등 경제선진국 보다 앞서 IFRS를 도입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분석함으로써 원칙중심의 IFRS가 감사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공헌점을 가진다. 특히 선행연구들이 IFRS 도입 효과를 자본시장 관점에서 살펴본 것과 달리 본 연구는 감사인 관점에서 IFRS의 도입 효과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감사인, 감사대상회사, 감독기관 등에게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국제회계기준, 감사시간, 감사보수, 감사시간당 감사보수

I. 서론

본 연구는 2011년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인 국제회계기준(이하 'IFRS')이 전면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국내 상장기업의 감사인이 감사시간을 추가로 투입하는지 분석한다. 또한 추가적인 감사투입시간에 따른 감사보수의 청구가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본다.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2011 회계연도부터 모두 IFRS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해야 한다.¹⁾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이 구체적이고 규정중심(rule-based)적인 회계처리방법을 제시하였다면, IFRS는 일반적이고 원칙중심(principles-based)적인 회계처리방향을 제시한다. 감사인은 감사대상회사의 재무제표가 미리 설정된 기준인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었는지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감사인에게 회계기준의 변경은 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 측면에서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은 세부사항에 따라 적용해야 하는 회계처리기준을 규정 형태로 제시하고 규정의 일부인 세부지침을 통해 모호한 회계처리에 대한 처리방법을 제공하였다. 구체적으로 객관적인 공정가치 평가가 어려운 항목들은 취득원가로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처음 채택한 회계처리방침을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재무

1) 우리나라의 거래소상장기업과 코스닥상장기업이 2011 회계연도부터 적용해야 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국제회계기준(IFRS)과 원칙적으로 내용이 동일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K-IFRS를 IFRS라 표기한다.

제표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중시하였다. 반면에 IFRS는 종전의 기업회계기준과는 달리 회계처리의 일반원칙만을 제시하고, 기업이 제시된 원칙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경제적 실질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IFRS는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에 비하여 공정가치 평가를 더욱 확대하고 있으며 기업의 환경이나 경제적 실질이 변화할 경우 회계처리방침을 비교적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회계정보의 목적적합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로 인하여 IFRS가 의무 도입된 2011 회계연도에는 감사대상회사의 회계처리가 IFRS에서 제시한 일반원칙에 부합하는 방법인지에 대한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이 많이 요구될 것이다. 즉, 과거의 감사업무가 감사대상회사의 회계처리가 구체적인 회계기준의 내용 및 세부지침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감사하는 것이었다면, IFRS가 의무 도입된 2011 회계연도부터의 감사업무는 일반원칙에 비추어 적절한 회계처리인지 여부에 대한 전문가적 회계지식과 감사대상회사의 경제적 실질에 대한 고려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과거에 비해 감사인이 감사업무에 투입해야 하는 감사투입시간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감사투입시간의 증가로 인해 감사인은 추가적인 감사보수를 청구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선행연구는 감사대상회사의 개별적인 특성이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는 회계기준변경이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또한 본 연구는 미국, 일본 등 경제선진국 보다 앞서 IFRS를 도입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분석함으로써 원칙중심의 IFRS가 감사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공헌점을 가진다. 특히 선행연구들이 IFRS 도입 효과를 자본시장 관점에서 살펴본 것과 달리 본 연구는 감사인 관점에서 IFRS의 도입 효과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감사인, 감사대상회사, 감독기관 등에게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제Ⅲ장에서는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방법을 설명한다. 제Ⅳ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제Ⅴ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감사인은 감사대상회사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의견을 표명한다. 감사인은 이 때 재무제표의 적절

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회계기준을 사용한다. 그러므로 회계기준의 성격에 따라 감사인이 인식하는 감사위험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즉, 회계기준이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면 감사인이 재무제표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은 상대적으로 수월할 것이다. 그러나 회계기준이 일반적인 원칙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은 감사대상회사가 판단하도록 한다면 감사인의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감사인은 규정중심(rule-based)적인 회계기준보다 원칙중심(principles-based)적인 회계기준 하에서의 감사위험을 높게 평가할 것이다.

IFRS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이라는 점이다.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선택범위가 넓어지고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하는 항목이 증가한 상황에서, 감사인은 감사대상회사의 회계처리가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종전의 경우보다 더욱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해야 하고 개별 기업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감사인은 과거 기업회계기준 하에서의 감사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IFRS 도입 이후에 보다 많은 감사시간을 감사업무에 투입할 것이다.

감사투입시간의 증가는 감사업무의 원가를 증가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감사보수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지만, 선행연구에 따르면 감사인 간의 경쟁 심화로 인하여 초도감사의 경우 감사보수 할인현상이 나타나거나(이상철 등 2011), 감사시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감사보수 증가가 유의적이지 못하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이명곤 등 2009). 하지만 IFRS의 도입은 감사인 변경이나 일부 특성을 지닌 일부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라 전체 상장회사에 동시에 적용되는 사건이며, IFRS의 도입으로 감사시간과 감사보수가 증가될 것이라는 의식이 사전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감사인의 경쟁 정도가 완화됨으로서 감사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임석식 등(2009)은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IFRS가 도입되면 감사투입시간과 감사보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감사품질은 재무제표에 포함된 부정과 오류를 발견할 확률과 발견된 부정과 오류를 보고할 확률의 결합 확률로 정의할 수 있다(DeAngelo 1981). 이 때, 부정과 오류를 발견할 위험을 감사위험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감사위험은 고유위험과 통제위험 및 적발위험으로 구성된다. 감사인은 일정 수준의 감사품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사대상회사의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을 평가한 후 평가결과에 따라 적발위험 수준을 결정하며, 적발위험 수준에 따라 감사투입시간을 결정하게 된다.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이 높게 평가되면 감사인은 감사투입시간을 증가시키므로써 일정 수준의 감사품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이 낮게 평가된다면 감사인은 효율적인 감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일정 수준의 감사품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감사투입시간을 감소시키게 된다.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대부분 감사대상회사의 고유위험과 통제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감사대상회사의 회계처리가 보수적인 경우 감사시간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직전년도 재무제표가 보수적이면 당해 연도 감사보수는 감소하고, 당해 연도 감사보수가 증가하면 당해 연도 재무제표의 보수성이 강화된다는 결과를 보고한 연구들이 존재한다(우용상 등 2007). 또한 감사보수는 감사대상회사의 규모와 영업의 복잡성, 재무위험, 잠재적 소송위험, 기업지배구조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imunic 1980; Palmrose 1989; Craswell et al. 1995; Niemi 2005). 감사대상회사의 소송위험이나 기업실패위험이 높은 경우와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에 감사보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강내철 2008; 이경태 등 2007; 이명곤 등 2008). 또한 Stanley(2011)는 감사보수와 감사대상회사의 미래 경영성과 간에 음(-)의 관련성이 존재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Stanley(2011)는 감사인이 감사대상회사의 사업위험이 높을 경우 감사보수를 추가적으로 청구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감사보수와 관련해서는 감사대상회사의 개별적인 특성 이외에도 1999년부터 국내에서 감사보수가 자율화되면서 감사인 간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감사보수가 감소되는 현상을 보고한 연구들이 존재한다(권수영과 김문철 2001). 특히 Chan(1999)과 이상철 등(2011)은 감사인이 변경되는 첫 해에는 감사보수 할인현상이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감사인 간의 경쟁심화현상은 비보수적인 회계처리를 수행하는 감사대상회사의 경우 감사투입시간은 증가하였지만 감사인 간의 경쟁으로 인해 감사보수는 증가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고한 이명곤 등(2009)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감사대상회사의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이 높게 평가되는 경우 감사인은 목표감사위험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사투입시간을 증가시킨다. 하지만 이렇게 증가한 감사시간이 감사보수의 증가로 이어지는 현상은 감사인 간의 경쟁으로 인한 가격경쟁의 여파로 인해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IFRS의 도입은 감사대상회사의 회계환경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이며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모든 감사대상회사의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목표감사위험은 개별 기업의 특성뿐만 아니라 정보이용자의 재무제표 의존도와 기업의 파산가능성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데(이효익 2005), IFRS의 도입은 많은 회계정보이용자가 관심을 가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목표감사위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IFRS의 도입은 감사대상회사의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목표감사위험을 감소시킴으로써 감사인이 적발위험을 낮춰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만들 것이다. 결과적으로 감사인은 적발위험의 감소를 위해 감사투입

시간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까지 IFRS를 주제로 수행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자본시장 관점에서 IFRS 도입에 대한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강선민과 황인태(2011)는 IFRS의 도입으로 인한 자산의 재평가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이우재 등(2011)은 국내에서 IFRS를 조기에 도입한 기업들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이우재 등(2011)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거래소 상장기업 중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 비용을 보고한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부채비율과 자금조달의 수요, 시가총액이 국제회계기준 도입비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Koonce et al.(2011)은 설문을 통해 공정가치 평가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투자자들은 공정가치 평가가 기업의 가치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동일한 관점에서 IFRS의 도입이 감사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먼저 IFRS를 도입한 국가들에서 IFRS의 도입이 감사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이 존재한다. Vieru and Schadewitz(2010)은 핀란드의 회계기준이 IFRS로 변경됨에 따라 감사환경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IFRS의 도입으로 감사보수가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IFRS의 도입과 관련한 자문용역의 수행으로 인해 비감사보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Griffin et al.(2009)은 IFRS의 도입과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법규의 개정이 뉴질랜드의 감사환경에 가져온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법규의 개정으로 인한 감사보수의 증가보다 IFRS의 도입으로 인한 감사보수의 증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Goncharov et al.(2012)은 IFRS로 인한 공정가치 평가가 감사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유럽의 부동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정가치 평가가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업이 공정가치 평가를 수행할수록 감사보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oncharov et al.(2012)은 공정가치 평가로 인해 기업과 자본시장 간의 정보비대칭이 감소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Goncharov et al.(2012)은 부동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다.

IFRS의 도입은 개별 기업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상장기업 전체에 일시에 적용되는 현상이다.²⁾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감사대상회사의 개별 특성을 이용하여 측정된 감사위험이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전

2) 일부 기업의 경우 2011년도 이전에 IFRS를 조기에 도입하였지만, 조기도입 기업이 전체 상장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조기도입 기업을 제외하고 분석을 실시한다.

체 상장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회계환경의 변화가 감사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³⁾ 물론 국외에서 IFRS의 도입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이 존재하지만, 감사시간과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당 감사보수를 살펴본 연구는 없는 상황이다. 즉, 본 연구는 IFRS의 도입이 감사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Ⅲ. 연구설계

1. 가설설정

IFRS의 도입이 국내의 감사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감사대상회사의 경제적 실질을 파악하기 위한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과 노력이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종전의 기업회계기준과 달리 IFRS는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원칙만을 제시하고 감사대상회사가 경제적 실질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감사인이 감사대상회사의 회계처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감사의견을 표명하기 위해서는 감사대상회사의 경제적 실질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를 위해 감사인은 감사대상회사 뿐만 아니라 감사대상회사가 속한 산업에 대한 분석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즉, 감사대상회사의 경제적 실질을 파악하기 위한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과 노력이 보다 중요해진 것이다.

둘째, 감사인과 감사대상회사 간의 의견불일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은 감사대상회사가 적용해야 하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논란이 될 수 있는 사항의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처리지침을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인과 감사대상회사 사이에 의견불일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IFRS 하에서는 감사대상회사의 경제적 실질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회계처리방법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감사인과 감사대상회사 간의 의견불일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재평가손익, 손상차손 인식 등 자산의 공정가치 평가가 확대된 상황에서 감사인과 감사대상회사 간의 의견불일치가 발

3) 본 연구와 동일한 관점에서 Ghoch and Pawlewicz(2009)는 Sarbanes-Oxley Act의 제정 이후 감사보수가 증가했는지 살펴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Sarbanes-Oxley Act와 같은 감사관련제도의 제정이 아닌 회계기준의 변경이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Ghoch and Pawlewicz(2009)와 차이가 있다.

생활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Bell et al.(2012)은 공정가치 평가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자본시장의 참여자, 감사대상회사, 감사인 등이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셋째, IFRS의 도입으로 인한 감사업무의 난이도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IFRS의 도입으로 인해 가장 큰 회계적 변화는 주재무제표가 개별재무제표에서 연결재무제표로 변경되었다는 것이다. 개별재무제표의 감사업무보다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업무는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뿐만 아니라 연결실체에 대한 이해, 감사위험의 증가 등으로 인해 감사의 난이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감사인의 입장에서 IFRS의 도입으로 인한 주재무제표의 변경은 감사업무의 난이도를 증가시키는 요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또한 IFRS의 도입으로 인해 금융자산, 종업원급여 등과 같이 과거 기업회계기준 하에서 보다 회계처리가 복잡하고 타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등의 회계처리에 큰 변화가 있다는 것도 감사업무의 난이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IFRS의 도입은 회계 관련 산업뿐만 아니라 국내의 자본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이슈라는 것이다. 정보이용자들은 IFRS 도입으로 인하여 재무제표가 어떻게 작성되고 변화할 것인지에 대하여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즉, IFRS의 도입으로 인해 정보이용자들의 재무제표 의존도가 과거에 비해 높아진 상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감사인의 입장에서 목표감사위험을 낮추기 위해 종전의 기업회계기준 하에서 재무제표를 감사할 때 보다 많은 노력을 감사업무에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IFRS의 도입이 국내 감사환경에 미치는 요인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네 가지 요인은 모두 재무제표 감사에 있어 감사인의 추가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 즉, 감사인은 IFRS의 도입으로 인해 감사투입시간을 증가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IFRS 도입 이전에 비해 IFRS 도입 이후에 감사투입시간이 증가할 것이라는 다음의 가설을 설정한다.⁴⁾

가설 1: IFRS 도입 이전에 비해 IFRS 도입 이후에 감사투입시간은 증가할 것이다.

감사인 입장에서 IFRS 도입으로 인해 감사투입시간이 증가한다는 것은 감사업무의 원가가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감사인은 감사업무의 원가를 회수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감사보수를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IFRS의 도입으로 인해 감사위

4) IFRS의 도입 첫해에는 IFRS에 대한 감사인의 전문성 부족이 감사시간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기업회계기준과 달리 IFRS는 공정가치 평가를 위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작성해야 하는 주석의 증가 등과 같은 추가적인 회계처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임석식 등 2008). 따라서 IFRS에 대한 감사인의 전문성이 향상되더라도 감사인의 노력이 과거 기업회계기준 하에서 비해 추가적으로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험과 정보이용자의 재무제표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감사인은 이에 대한 보상으로 추가적인 감사보수를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감사시간과 감사보수 간에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존재한다는 결과를 보고한 연구들과 감사인 간의 경쟁으로 인해 감사시간의 증가가 감사보수의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고한 선행연구들이 존재한다(권수영 등 2005; 이명곤 등 2009). 즉, 감사시간의 증가가 감사보수의 인상으로 연결된다는 연구결과와 그렇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혼재되어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혼재된 연구결과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감사시간과 감사보수 간에 양(+)의 관련성이 존재하지만, 자유수입제 도입 이후 감사인 간의 가격경쟁으로 인하여 감사시간의 증가가 감사보수의 인상으로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감사인 간의 가격경쟁이 심화된 상황에서는 감사투입시간의 증가가 감사보수로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IFRS 도입은 거래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모든 기업에게 의무적으로 도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인들은 모두 동일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즉, IFRS의 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감사보수의 청구에 있어서 감사인 간의 경쟁적인 요인 중 상당부분이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IFRS 도입 이전에 비해 IFRS 도입 이후에 감사보수는 증가할 것이라는 다음의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2: IFRS 도입 이전에 비해 IFRS 도입 이후에 감사보수는 증가할 것이다.

감사인이 감사대상회사의 감사위험을 높게 평가할 경우 추가적인 감사시간을 투입하지 않고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 감사보수를 청구할 수도 있으나, 감사시간을 추가로 투입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추가적인 감사보수를 청구할 수도 있다. Bell et al.(2001)은 감사인이 감사위험을 높게 평가하는 경우 감사시간당 감사보수가 변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Bell et al.(2001)은 감사인이 감사위험을 높게 평가하는 경우 추가적인 감사시간을 투입하고 이에 대한 보상이 감사보수를 유사한 비율로 청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설 1과 가설 2를 설정한 논리에 비추어보면 IFRS의 도입으로 인해 감사시간과 감사보수는 모두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즉, IFRS의 도입은 감사대상회사의 감사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감사인은 추가적인 감사시간을 투입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Bell et al.(2001)의 주장과 동일하게 감사인이 추가적인 감사시간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IFRS의 도입과 감사시간당 감사보수 간에는 관련성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감사보수의 자율화 이후 감

사인 간의 가격경쟁이 심화된 상황에서 감사인은 투입한 감사시간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IFRS의 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감사시간의 투입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IFRS의 도입과 감사시간당 감사보수 간에는 음(-)의 관련성이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설 3을 귀무가설 형식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⁵⁾

가설 3: IFRS 도입 이전과 이후에 감사시간당 감사보수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2.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가설 1과 가설 2 및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하여 각각 모형 (1)과 모형 (2) 및 모형 (3)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모형 (1)과 모형 (2) 및 모형 (3)의 종속변수는 각각 감사시간(AHOUR)과 감사보수(AFEE) 및 감사시간당 감사보수(UFEE)이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변수는 IFRS로 IFRS를 전면적으로 도입한 2011년도이면 1의 값을 갖고, 아니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다. 따라서 모형 (1)과 모형 (2)에서 IFRS의 회귀계수가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인다면 가설 1과 가설 2가 지지된다고 할 수 있다. 모형 (3)의 경우 IFRS가 유의하지 않은 회귀계수를 보인다면 가설 3이 지지되는 것이다. 그러나 모형 (3)에서 IFRS가 유의한 회귀계수를 보인다면 가설 3이 기각된다고 할 수 있다.

IFRS가 전면적으로 도입되는 것은 2011년이지만 감사인은 2010년 감사보고서에 IFRS 도입으로 인한 2010년 재무제표의 변환효과를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따라서 종전 기업회계기준 하에서 감사인이 작성해야 하는 2010년 감사보고서에는 기존의 기업회계기준과 IFRS 도입의 효과가 혼재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⁶⁾ 본 연구는 IFRS 도입으로 인한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의 변화 여부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2009년과 2011년을 분석기간으로 선정한다.

5) 정영기(2012)는 IFRS의 조기도입이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동일한 관점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IFRS의 도입이 감사시간당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IFRS의 도입으로 인한 감사시간의 증가폭과 대비하여 감사보수가 증가하였는지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정영기(2012)와 차별된다. 또한 본 연구는 IFRS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2011년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한다는 점에서도 정영기(2012)와 차이가 있다.

6) 감사인은 2010년에 기존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뿐만 아니라 IFRS의 도입으로 인한 변환효과를 감사보고서에 주석으로 기재해야 하는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2010년의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의 영향과 IFRS의 도입에 따른 영향이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2010년 표본과 2011년 표본을 대상으로도 분석을 수행한 결과 후술하는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begin{aligned}
 AHOUR_{i,t} = & a_0 + a_1IFRS_{i,t} + a_2SIZE_{i,t} + a_3CONFM_{i,t} + a_4INVREC_{i,t} \\
 & + a_5ISSUE_{i,t} + a_6LIQ_{i,t} + a_7LEV_{i,t} + a_8ROA_{i,t} + a_9LOSS_{i,t} \\
 & + a_{10}GRW_{i,t} + a_{11}BIG4_{i,t} + a_{12}FIRST_{i,t} + a_{13}LARGE_{i,t} + a_{14}FORN_{i,t} \\
 & + a_{15}MARKET_{i,t} + \sum p_i IND_{i,t} + \varepsilon_{i,t}
 \end{aligned}
 \tag{1}$$

$$\begin{aligned}
 AFEE_{i,t} = & b_0 + b_1IFRS_{i,t} + b_2SIZE_{i,t-1} + b_3CONFM_{i,t} + b_4INVREC_{i,t-1} \\
 & + b_5ISSUE_{i,t-1} + b_6LIQ_{i,t-1} + b_7LEV_{i,t-1} + b_8ROA_{i,t-1} + b_9LOSS_{i,t-1} \\
 & + b_{10}GRW_{i,t-1} + b_{11}BIG4_{i,t} + b_{12}FIRST_{i,t} + b_{13}LARGE_{i,t-1} \\
 & + b_{14}FORN_{i,t-1} + b_{15}MARKET_{i,t} + \sum p_i IND_{i,t} + \varepsilon_{i,t}
 \end{aligned}
 \tag{2}$$

$$\begin{aligned}
 UFEE_{i,t} = & c_0 + c_1IFRS_{i,t} + c_2SIZE_{i,t-1} + c_3CONFM_{i,t} + c_4INVREC_{i,t-1} \\
 & + c_5ISSUE_{i,t-1} + c_6LIQ_{i,t-1} + c_7LEV_{i,t-1} + c_8ROA_{i,t-1} + c_9LOSS_{i,t-1} \\
 & + c_{10}GRW_{i,t-1} + c_{11}BIG4_{i,t} + c_{12}FIRST_{i,t} + c_{13}LARGE_{i,t-1} + c_{14}FORN_{i,t-1} \\
 & + c_{15}MARKET_{i,t} + \sum p_i IND_{i,t} + \varepsilon_{i,t}
 \end{aligned}
 \tag{3}$$

- AHOUR : 감사시간의 자연로그 값
- AFEE : 감사보수의 자연로그 값
- UFEE : 감사시간당 감사보수의 자연로그 값
- IFRS : IFRS의 도입연도이면 1, 아니면 0
- SIZE : 감사대상회사 총자산의 자연로그 값
- CONFM : 연결 자회사 수의 자연로그 값
- INVREC :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 ISSUE : 주식 및 사채 발행 조달액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 LIQ : 유동비율
- LEV : 부채비율
- ROA : 총자산이익율
- LOSS : 손실발생 기업이면 1, 아니면 0
- GRW : 매출액의 성장률
- BIG4 : 감사인이 BIG4면 1, 아니면 0
- FIRST : 초도감사 기업이면 1, 아니면 0
- LARGE : 대주주 지분율
- FORN : 외국인 지분율
- MARKET : 코스닥 상장기업이면 1, 아니면 0
- IND : 한국산업분류기준 중분류 산업코드로 선정한 산업별 더미
- ε : 잔차항

우리나라의 경우 감사대상회사의 직전년도 재무자료에 근거하여 감사보수가 감사계약 단계에서 결정되며, 감사수행 과정에서는 감사보수에 대한 조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박종일과 박찬웅 2007). 이러한 실무적인 현상을 반영하여 감사보수 결정모형인 모형 (2)와 모형 (3)에서 종속변수인 감사보수(AFEE) 및 감사시간당 감사보수(UFEE)와 독립변수 간의 측정시점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단, 감사인의 특성과 관련한 감사인 규모 (BIG4), 초도감사여부(FIRST) 등은 감사보수의 측정시점과 동일한 시점에서 측정한다.

선행연구를 통해 감사시간과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당 감사보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알려진 변수를 통제변수로 설정한다. 구체적으로 감사대상회사의 규모와 영업의 복잡성은 감사투입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Palmrose 1989; Francis 1984; 최 관과 주인기 1998). 감사대상회사의 규모가 크면 감사업무가 확대됨으로서 감사시간과 감사보수가 증가할 것이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감사대상회사의 경우 연결 자회사의 수가 많아질수록 지분법을 적용해야 하는 등 연결재무제표 감사업무가 복잡하고 많아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감사인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업규모를 의미하는 SIZE와 연결 자회사 수를 의미하는 CONFM을 통제변수로 모형에 추가한다.⁷⁾

재고자산과 매출채권이 증가할수록 실사작업이나 조회절차 등으로 인하여 감사시간이 증가할 것이다(최 관과 주인기 1998). 이러한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INVREC)을 통제변수로 추가한다. 감사인은 감사대상회사의 재무위험이 높으면 적발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감사투입을 증가시킬 것이다. 부채비율이 높거나 외부자금의 조달비율이 높으면 재무제표의 왜곡표시에 대한 소송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며,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이익률이 낮은 경우에는 감사대상회사의 이익조정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므로 감사투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⁹⁾ 선행 연구에서도 총자산 이익률과 부채비율 등을 감사보수모형에서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주식 및 사채발행 조달액이 총자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ISSUE)과 부채비율(LEV), 유동비율(LIQ), 총자산이익률(ROA) 및 손실발생 여부(LOSS)를 통제변수로 설정한다(Simunic 1980; Francis 1984; Blankley et al. 2012). 또한 감사대상회사의 성장으로 인한 감사인의 감사시간 투입과 감사보수 청구를 통제하기 위하여 매출액 성장률(GRW)을 통제변수로 추가한다.

감사보고서의 주된 이용자 중 하나인 주주의 구성에 따라서 감사인이 평가하는 감사위험이 달라질 것이다. 외국인 주주의 지분율이 높으면 제공되는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짐에 따라 감사대상회사는 보수적인 회계처리를 선호하게 된다(김정옥과 배길수 2006).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을 경우에는 견제되는 소수주주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익조정의 유인이 더 클 것이다(박범진 2012). 이러한 영향이 연구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대주주 지분율(LARGE)과 외국인 지분율(FORN)을 통제변수로 추가하였다.

감사인의 규모가 크면 감사인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사투입을 증가시킬 것이

7) 모형 (2)와 모형 (3)에서 CONFM의 경우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직전년도 자료가 아닌 당해연도의 자료를 사용한다(박종일과 박찬웅 2005).

8) CONFM 대신에 연결 대상 자회사 자산규모의 자연로그 값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후술하는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9) 이경태 등(2007)은 감사보수를 결정하는 요인을 통제한 후에도 소송위험의 대응치와 감사보수 간에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다. 국내의 선행연구에서도 감사인의 규모는 감사투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감사보수 관련 연구에서 통제변수로 포함시키고 있다(Francis 1984; Palmrose 1989; 박종일과 박찬웅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감사인의 규모를 의미하는 BIG4를 통제변수로 설정한다. 박종성 등(2010)과 이상철 등(2011)은 우리나라 감사시장에서도 초도감사보수할인 현상이 존재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통제하기 위하여 초도감사를 의미하는 FIRST를 통제변수로 추가한다. 한편, 감사시간의 경우 감사대상회사와 영업활동을 이해하기 위한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감사보수와 달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 표본선정

본 연구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거래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12월 결산법인 중 비금융업에 속하는 기업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한다. IFRS는 2011년부터 전면적으로 도입되었으나 2010년도 감사보고서에 IFRS의 도입으로 인한 변환효과를 주석으로 공시해야 하기 때문에 2010년을 분석기간에 포함할 경우 IFRS 도입의 효과분석에 잡음(noise)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9년과 2011년 자료만을 사용하여 가설을 검증한다.

<표 1> 표본의 연도 및 산업별 분포¹⁰⁾

패널 A. 표본의 연도별 분포		
연 도	표본수	구성비율(%)
2009	534	50.71
2011	519	49.29
합 계	1,053	100.00

패널 B. 표본의 산업별 분포		
산업구분	표본 수	구성비율(%)
1차 산업(어업)	8	0.76%
식품품 제조업	37	3.51%
섬유/의복/가죽 제조업	30	2.85%
펄프/코크스/화학/의약품 제조업	167	15.86%
고무제품/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7	5.41%
1차금속/금속가공제품 제조업	71	6.74%
전자부품/전기장비 제조업	264	25.07%

10) 2009년과 2011년 자료를 모두 추출할 수 있는 976개의 기업-연도자료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한 결과 후술하는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동차/기타운송장비 제조업	87	8.26%
가구/기타제품 제조업	9	0.8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6	1.52%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6	0.57%
건설업	64	6.08%
도소매업	82	7.79%
운송업	19	1.80%
출판/영상/방송/통신	67	6.36%
서비스업	69	6.55%
합 계	1,053	100.00%

극단치가 본 연구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모형 (1), 모형 (2) 및 모형 (3)에서 R-Student의 절대값이 2를 초과하는 표본은 제외한다. 기업의 재무자료와 주가자료는 (주)한국신용평가의 Kis-Value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TS-2000 및 FN-Guide에서 수집하였으며, 감사시간과 감사보수 자료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추출하였다. IFRS를 조기에 도입한 기업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표본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구체적으로 거래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2009년과 2011년에 상장된 총 3,263개의 표본 중 100시간 미만의 감사시간을 공시한 기업, 1,000만원 미만의 감사보수를 공시한 기업, 이해하기 어려운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의 변동을 기재한 기업(예를 들어, 당해연도 감사시간(감사보수)이 직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거나 1/2로 감소한 기업), 3년 이상 동일한 감사시간 또는 감사보수를 기재한 기업, 재무자료를 추출할 수 없는 기업 등에 해당하는 총 2,210개의 기업-연도자료를 제외하고 분석을 수행한다.

- (1) 감사시간과 감사보수를 공시하지 않은 기업
- (2) 공시된 감사시간과 감사보수가 비정상적이라고 판단되는 기업¹¹⁾
- (3) 자본잠식기업

이와 같은 과정으로 선정된 최종표본의 연도 및 산업별 분포는 <표 1>에 제시한다. IFRS를 도입하기 이전과 이후인 2009년과 2011년의 표본비율은 각각 50.71%와 49.29%로 거의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다.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자부품/전기장비 제조업에

11) 회계감사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 감사절차(감사계획, 중간감사, 재고 및 금융실사, 입증감사절차, 내부심리절차 등)를 모두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100시간 이상의 감사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최소한의 감사시간과 상장회사이기 때문에 고려해야 하는 감사위험 등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감사보수는 1,000만원 이상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100시간 미만의 감사시간을 공시한 기업과 공시한 감사보수가 1,000만원 이하인 기업은 표본에서 제외한다(박종일과 박찬웅 2007; 이명곤 등 2009).

속하는 기업과 펄프/코크스/화학/의약품 제조업에 속하는 기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IV. 분석결과

1.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 분석

<표 2>는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보여주고 있다. 거래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2009년과 2011년 감사시간 평균값은 각각 약 1,157시간과 약 1,510시간이었으며, 감사보수의 평균값은 각각 약 18,115천원과 약 18,211천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IFRS 도입 전보다 도입 후의 감사시간과 감사보수가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감사시간당 감사보수의 평균값과 중위수는 각각 약 86,003원과 81,937원으로 보고되고 있다.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의 경우 모두 평균값이 중위수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감사대상회사 규모를 나타내는 자산총액의 평균값(26.059, 약 2,076억원)이 중위수(25.695, 약 1,443억원) 보다 크게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자산규모가 큰 일부 기업의 높은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¹²⁾

<표 2> 기술통계량(n=1,053)

분류 변수	IFRS 도입 후(n=519)			IFRS 도입 전(n=534)		
	평균	표준편차	중위수	평균	표준편차	중위수
AHOUR	6.963	0.723	6.802	6.743	0.679	6.579
AHOUR(원값)	1,510.480	1,914.890	900.000	1,156.750	1,375.800	720.000
AFEE	18.211	0.723	18.064	18.115	0.692	17.986
AFEE(원값)	116.377	155.582	70.000	101	122.347	6.475
UFEE	11.248	0.319	11.264	11.372	0.310	11.382
UFEE(원값)	80,665.110	25,973.730	77,948.720	91,190.410	29,788.740	87,719.300
IFRS	1	0	1	0	0	0
SIZE	26.136	1.533	25.803	25.985	1.494	25.607
CONFM	1.213	1.019	1.099	0.967	1.126	0.693

12) 권수영 등(2005)은 2000년부터 2003년의 거래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표본을 대상으로 감사보수의 평균값과 중위수를 각각 약 64백만원과 약 40백만원, 감사시간의 평균값과 중위수를 각각 약 633시간과 약 314시간으로 보고하였다. 이명곤 등(2009)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6년의 거래소 상장기업의 감사보수 평균값과 중위수는 각각 약 78백만원과 약 65백만원, 감사시간의 평균값과 중위수는 각각 약 894시간과 약 791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표본기간이 2009년과 2011년이라는 점에서 권수영 등(2005)에 비하여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거래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모두 포함한다는 점에서 이명곤 등(2009)의 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i>INVREC</i>	0.325	0.201	0.297	0.300	0.182	0.280
<i>ISSUE</i>	0.153	0.168	0.096	0.156	0.139	0.111
<i>LIQ</i>	2.443	4.230	1.443	2.277	2.794	1.419
<i>LEV</i>	0.429	0.205	0.417	0.415	0.196	0.416
<i>ROA</i>	0.018	0.116	0.029	0.041	0.116	0.043
<i>LOSS</i>	0.235	0.424	0	0.197	0.398	0
<i>GRW</i>	0.099	0.331	0.084	0.028	0.292	0.019
<i>BIG4</i>	0.590	0.492	1	0.590	0.492	1
<i>FIRST</i>	0.218	0.413	0	0.129	0.336	0
<i>LARGE</i>	0.415	0.166	0.420	0.410	0.163	0.411
<i>FORN</i>	0.027	0.095	0	0.029	0.097	0
<i>MARKET</i>	0.474	0.500	0	0.464	0.499	0

1) 변수설명

<i>AHOUR</i>	: 감사시간의 자연로그 값
<i>AHOUR</i> (원값)	: 감사시간(단위: 시간)
<i>AFEE</i>	: 감사보수의 자연로그 값
<i>AFEE</i> (원값)	: 감사보수(단위: 백만원)
<i>UFEE</i>	: 감사시간당 감사보수의 자연로그 값
<i>UFEE</i> (원값)	: 감사시간당 감사보수(단위: 원)
<i>IFRS</i>	: IFRS의 도입연도이면 1, 아니면 0
<i>SIZE</i>	: 감사대상회사 총자산의 자연로그 값
<i>CONFM</i>	: 연결 자회사 수의 자연로그 값
<i>INVREC</i>	: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i>ISSUE</i>	: 주식 및 사채 발행 조달액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i>LIQ</i>	: 유동비율
<i>LEV</i>	: 부채비율
<i>ROA</i>	: 총자산이익율
<i>LOSS</i>	: 손실발생 기업이면 1, 아니면 0
<i>GRW</i>	: 매출액의 성장률
<i>BIG4</i>	: 감사인이 BIG4면 1, 아니면 0
<i>FIRST</i>	: 초도감사 기업이면 1, 아니면 0
<i>LARGE</i>	: 대주주 지분율
<i>FORN</i>	: 외국인 지분율
<i>MARKET</i>	: 코스닥 상장기업이면 1, 아니면 0

연결자회사의 수를 의미하는 *CONFM*의 평균은 약 1.088로 전체표본의 연결 자회사 수가 약 3개 정도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총자산에서 재고자산과 매출채권이 차지하는 비중(*INVREC*)은 약 31%로 나타났다. 유동비율(*LIQ*)과 부채비율(*LEV*)의 평균값은 각각 2.359와 0.422로 나타났으며, *ROA*의 평균은 0.030의 값을 보이고 있다. 전체표본 중 직전년도에 손실을 보고한 기업의 비율은 약 21.6%로 나타났다.

〈표 3〉 상관관계 분석결과(n=1,053)

변수	AHOUR	ALEE	UFEF	IFRS	SIZE	CONFM	INVREC	ISSUE	LIQ	LEV	ROA	LOSS	GRW	BIG4	FIRST	LARGE	FORN
ALEE	0.301 (<.0001)																
UFEF	-0.236 (<.0001)	0.209 (<.0001)															
IFRS	0.164 (<.0001)	0.077 (0.0119)	-0.197 (<.0001)														
SIZE	0.872 (<.0001)	0.881 (<.0001)	0.007 (0.8110)	0.058 (0.0582)													
CONFM	0.716 (<.0001)	0.688 (<.0001)	-0.073 (0.0165)	0.114 (0.0002)	0.646 (<.0001)												
INVREC	-0.194 (<.0001)	-0.177 (<.0001)	0.042 (0.1736)	0.049 (0.1131)	-0.186 (<.0001)	-0.201 (<.0001)											
ISSUE	-0.069 (0.0240)	-0.069 (0.0244)	0.001 (0.9645)	-0.018 (0.5615)	-0.205 (<.0001)	0.082 (0.1921)	0.082 (0.0072)										
LIQ	-0.172 (<.0001)	-0.181 (<.0001)	-0.018 (0.5635)	0.026 (0.4031)	-0.171 (<.0001)	-0.086 (0.0048)	-0.088 (0.0040)	0.116 (0.0001)									
LEV	0.253 (<.0001)	0.275 (<.0001)	0.045 (0.1381)	0.036 (0.2400)	0.233 (<.0001)	0.129 (<.0001)	0.185 (0.0059)	0.084 (0.0059)	-0.457 (<.0001)								
ROA	0.050 (0.1027)	0.073 (0.0170)	0.051 (0.0967)	-0.090 (0.0035)	0.160 (<.0001)	0.024 (0.4296)	0.010 (0.7544)	-0.297 (<.0001)	0.122 (<.0001)	-0.330 (<.0001)							
LOSS	-0.061 (0.0477)	-0.076 (0.0136)	-0.033 (0.2888)	0.047 (0.1274)	-0.169 (<.0001)	-0.061 (0.0475)	-0.037 (0.2293)	0.256 (<.0001)	-0.063 (0.0394)	0.285 (<.0001)	-0.642 (<.0001)						
GRW	0.014 (0.6471)	0.009 (0.7583)	-0.010 (0.7323)	0.077 (0.0123)	0.013 (0.6625)	-0.014 (0.6486)	0.225 (<.0001)	0.172 (<.0001)	-0.074 (0.0158)	0.002 (0.9378)	0.090 (0.0032)	-0.143 (<.0001)					
BIG4	0.469 (<.0001)	0.427 (<.0001)	-0.102 (0.0009)	-0.004 (0.9073)	0.470 (<.0001)	0.242 (<.0001)	-0.052 (0.0895)	-0.141 (<.0001)	-0.165 (<.0001)	0.102 (0.0009)	0.137 (<.0001)	-0.121 (<.0001)	-0.001 (0.9753)				
FIRST	-0.096 (0.0016)	-0.135 (<.0001)	-0.086 (0.0050)	0.109 (0.0004)	-0.142 (<.0001)	-0.090 (0.0032)	0.039 (0.2001)	0.076 (0.0133)	0.016 (0.5927)	0.069 (0.0236)	-0.120 (<.0001)	0.080 (0.0086)	0.015 (0.6334)	-0.182 (<.0001)			
LARGE	-0.065 (0.0339)	-0.084 (0.0060)	-0.042 (0.1701)	0.019 (0.5281)	0.024 (0.4431)	-0.102 (0.0009)	0.010 (0.7353)	-0.251 (<.0001)	0.002 (0.9610)	-0.063 (0.0406)	0.168 (<.0001)	-0.113 (0.0002)	0.029 (0.3478)	0.088 (0.0041)	-0.011 (0.7135)		
FORN	0.112 (0.0002)	0.112 (0.0003)	-0.003 (0.9305)	-0.008 (0.8056)	0.100 (0.0010)	0.013 (0.6827)	-0.009 (0.7795)	-0.075 (0.0144)	0.007 (0.8155)	-0.067 (0.0285)	0.067 (0.0295)	-0.049 (0.1135)	-0.002 (0.9464)	0.100 (0.0011)	-0.025 (0.4188)	0.103 (0.0008)	
MARKET	-0.455 (<.0001)	-0.436 (<.0001)	0.048 (0.1147)	0.008 (0.7924)	-0.534 (<.0001)	-0.330 (<.0001)	0.048 (0.1212)	0.119 (0.0001)	0.130 (<.0001)	-0.107 (0.0004)	-0.053 (0.0830)	0.088 (0.0040)	0.042 (0.1728)	-0.327 (<.0001)	0.104 (0.0007)	-0.106 (0.0005)	-0.128 (<.0001)

1) 변수별명은 〈표 2〉와 같음.
2) 괄호안의 수치는 p-값을 의미함.

감사인인 규모를 의미하는 BIG4의 평균값은 0.590으로 나타나 전체 표본의 약 59%가 BIG4 회계법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MARKET의 평균은 0.469로 나타나 전체 표본 중에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비중이 약 46.9%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에 대한 상관관계는 <표 3>에 제시한다. 본 연구의 관심변수인 IFRS와 감사시간 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IFRS와 감사보수 간에도 유의한 양(+)의 상관계수를 보이고 있다. 이는 본 연구의 가설 1과 가설 2를 지지하는 결과로 IFRS의 도입 이후 감사시간과 감사보수가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IFRS와 감사시간당 감사보수의 경우 유의한 음(-)의 상관계수를 보이고 있다. IFRS의 도입 이후 감사인의 감사투입시간이 증가한 것과 대비해 감사보수가 상대적으로 증가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IFRS를 제외한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감사시간(AHOUR)과 기업규모(SIZE), 감사보수(AFEE)와 기업규모(SIZE) 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감사대상회사의 규모가 감사시간과 감사보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감사시간과 BIG4, 감사보수와 BIG4 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계수를 보이고 있다. BIG4 감사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감사보수를 받고 있다는 선행연구와 일관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기업규모와 BIG4 간에도 유의한 양(+)의 상관계수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BIG4 감사인이 높은 감사보수를 받는 이유가 BIG4에게 감사를 받고 있는 감사대상회사 규모가 크기 때문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의미하는 것이다.

2. 회귀분석결과

본 연구의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한 회귀분석결과는 <표 4>에 제시한다. <표 4>의 결과를 살펴보면 IFRS의 회귀계수가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IFRS 도입 이전과 비교하여 IFRS 도입 이후에 감사시간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IFRS의 도입으로 인해 감사인이 감사업무에 투입하는 감사시간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1이 지지된다고 할 수 있다.

IFRS를 제외한 통제변수의 결과를 살펴보면 감사대상회사의 기업규모를 의미하는 SIZE는 유의한 양(+)의 회귀계수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의 결과와 동일하게 기업규모는 감사시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나타내고 있다. 연결 자회사의 수를 의미하는 CONFM도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이고 있다. 감사대상회사의 연결 자회사 수가 많을수록 감사업무의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감사인이 추가적인 감사시간을 투

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 4> IFRS의 도입이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n=1,053)

종속변수		AHOUR		
독립변수	기대부호	계수	t-값	p-값
절편		-1.892	-7.13***	<.0001
IFRS	+	0.140	7.56***	<.0001
SIZE	+	0.324	31.25***	<.0001
CONFM	+	0.152	12.86***	<.0001
INVREC	+	-0.099	-1.83*	0.0672
ISSUE	+	0.333	4.94***	<.0001
LIQ	-	-0.003	-1.23	0.2201
LEV	+	0.157	2.60***	0.0094
ROA	-	-0.034	-0.32	0.7509
LOSS	+	0.057	1.92*	0.0547
GRW	+	-0.006	-0.22	0.8226
BIG4	+	0.160	7.45***	<.0001
FIRST	+	0.039	1.57	0.1156
LARGE	-	-0.162	-2.69***	0.0073
FORN	+	0.358	3.69***	0.0002
MARKET	+	0.015	0.67	0.5013
산업더미		포함		
수정 R ²		0.835		

- 1) 변수설명은 <표 2>와 같음.
- 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감사인의 규모를 의미하는 BIG4의 경우 유의한 양(+)의 값을 보임으로써 감사인의 규모가 클수록 자신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감사시간을 투입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대주주 지분율을 의미하는 LARGE의 경우 유의한 음(-)의 계수를 보이고 있으나, 외국인 지분율을 의미하는 FORN의 경우 유의한 양(+)의 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이 총자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의미하는 INVREC의 경우 기대부호와 반대로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감사대상회사의 성장에 대한 기대가 감사인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표 5>는 본 연구의 가설 2에 대한 검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변수인 IFRS는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표 4>의 결과에 비추어볼 때 IFRS의 도입으로 감사인은 감사위험을 높게 평가하고 추가적인 감사시간을 투입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감사인은 추가적인 감사노력의 투입에 대한 대가로서 추가

적인 감사보수를 감사대상회사에 청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IFRS의 도입으로 감사보수가 증가한다는 <표 5>의 결과는 가설 2를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¹³⁾

IFRS를 제외한 통제변수의 결과를 살펴보면 기업규모(SIZE), 연결 자회사 수(CONFM), 주식 및 사채 발행 조달액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ISSUE), 부채비율(LEV), 감사인의 규모(BIG4), 외국인지분율(FORN) 등의 회귀계수가 모두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기업의 재무적 안정성을 의미하는 LIQ와 기업의 수익성을 의미하는 ROA 및 대주주 지분율(LARGE)은 모두 유의한 음(-)의 회귀계수를 보이고 있다.

<표 5> IFRS의 도입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n=1,053)

종속변수		AFEE		
독립변수	기대부호	계수	t-값	p-값
절편		8.626	31.77***	<.0001
IFRS	+	0.039	2.07**	0.0387
SIZE	+	0.362	34.19***	<.0001
CONFM	+	0.114	9.45***	<.0001
INVREC	+	0.031	0.57	0.5705
ISSUE	+	0.265	3.70***	0.0002
LIQ	-	-0.009	-3.05***	0.0023
LEV	+	0.183	3.04***	0.0024
ROA	-	-0.196	-1.84*	0.0655
LOSS	+	-0.027	-0.89	0.3742
GRW	+	-0.011	-0.48	0.6322
BIG4	+	0.055	2.50**	0.0125
FIRST	-	-0.025	-1.02	0.3090
LARGE	-	-0.198	-3.22***	0.0013
FORN	+	0.322	3.26***	0.0012
MARKET	+	0.048	2.06**	0.0392
산업더미		포함		
수정 R ²		0.827		

1) 변수설명은 <표 2>와 같음.

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IFRS의 도입이 감사시간당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설정한 가설 3의 검증결과는 <표 6>에 제시한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IFRS의 회귀계수가 유의한 음(-)의 값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IFRS의 도입으로 인해 감사인이 추가적으로 투

13) <표 5>의 분석에서 감사시간을 통제변수로 추가할 경우 IFRS의 회귀계수는 유의하지 않은 값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후술하는 <표 8>의 결과와 동일한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입한 감사시간에 대비하여 감사보수가 낮게 상승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IFRS의 도입으로 인해 감사시간과 감사보수가 모두 증가하였다는 <표 4>와 <표 5>의 결과를 고려해보면, <표 6>의 결과는 감사인이 추가적으로 감사시간을 투입한 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3은 기각된다고 할 수 있다.

IFRS를 제외한 통제변수의 결과를 살펴보면, 기업규모를 의미하는 SIZE가 유의한 양(+)의 계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감사인의 규모를 의미하는 BIG4의 회귀계수는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감사대상회사의 규모가 클수록 감사시간당 감사보수가 높아지는 반면에 감사인의 규모가 클수록 감사시간당 감사보수는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연결 자회사 수를 의미하는 CONFM은 유의한 음(-)의 값을 보임으로써 연결감사업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초도감사 여부를 의미하는 FIRST의 경우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냄으로써 초도감사보수할인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IFRS의 도입이 감사시간당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n=1,053)

종속변수		UFEF		
독립변수	기대부호	계수	t-값	p-값
절편		10.471	37.31***	<.0001
IFRS	+	-0.112	-5.75***	<.0001
SIZE	+	0.038	3.44***	0.0006
CONFM	+	-0.035	-2.82***	0.0049
INVREC	+	0.127	2.25**	0.0243
ISSUE	+	-0.046	-0.62	0.5376
LIQ	-	-0.002	-0.82	0.4098
LEV	+	0.027	0.43	0.6645
ROA	-	-0.104	-0.94	0.3458
LOSS	+	-0.003	-0.11	0.9151
GRW	+	0.000	0.01	0.9923
BIG4	+	-0.099	-4.39***	<.0001
FIRST	-	-0.074	-2.88***	0.0040
LARGE	-	-0.035	-0.55	0.5846
FORN	+	-0.021	-0.21	0.8373
MARKET	+	0.031	1.29	0.1975
산업더미		포함		
수정 R ²		0.075		

1) 변수설명은 <표 2>와 같음.

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IFRS 도입 이전과 비교하여 IFRS 도입 이후에 감사시간과 감사보수가 유의적으로 증가함으로써 가설 1과 가설 2를 모두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FRS는 회계처리의 일반적인 원칙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은 감사대상회사의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여 회계담당자가 선택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감사위험 중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을 증가시킨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표 4>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IFRS 도입 이후에 감사보수도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는 <표 5>의 결과는 증가된 감사시간에 대한 원가회수가 일정부분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감사시간이 증가하더라도 경쟁적인 감사수입제도로 인하여 감사보수가 증가하지 않은 경우가 보고되고 있으나(이명곤 등 2009), IFRS의 도입은 모든 상장기업이 일시에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인 간의 경쟁요소가 상당부분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감사시간당 감사보수는 IFRS 도입 이후에 유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표 6>의 결과는 경쟁적인 감사수입제도 하에서 감사보수의 할인이 완전히 배제되지 못하고 상당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IFRS 도입으로 인한 감사시간의 증가가 감사인 간의 경쟁으로 인하여 감사보수의 인상으로는 완전하게 반영되지 못한 것이라 볼 수 있다.

3. 민감도 분석

본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두 가지 민감도 분석을 수행한다. 우선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차이변수(change variable)를 이용하여 IFRS 도입의 효과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2011년과 2009년의 감사시간과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당 감사보수의 변화가 2009년과 2007년의 감사시간과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당 감사보수의 변화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다.¹⁴⁾ 두 번째로 감사보수와 총자산에 물가상승이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고 본 연구의 가설이 지지되는지를 분석한다.

가. 차이변수(change variable)를 이용한 분석

<표 7>에 차이변수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표 7>의 종속변수는 각각 감사시간과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당 감사보수의 차이변수를 의미하는 Δ AHOUR, Δ

14) 본 연구는 IFRS의 도입효과가 감사시간과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당 감사보수의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2011년과 2009년의 변동과 2009년과 2007년의 변동을 사용한다. 2010년의 경우 IFRS 조기도입의 효과와 감사인이 IFRS의 도입으로 인한 변환효과를 주식으로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감사시간과 감사보수 자료가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즉, 2010년의 자료를 사용할 경우 IFRS의 도입효과를 분석하는데 있어 연구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2010년의 자료를 분석에서 제외한다.

AFEE 및 $\Delta UFEE$ 이다. 또한 독립변수는 더미변수를 제외한 비율변수일 경우 종속변수와 동일하게 차이변수로 측정한다. 차이변수는 t년도 자료에서 t-2년도 자료를 차감한 변동분으로 측정하며, 종속변수가 $\Delta AFEE$ 와 $\Delta UFEE$ 인 경우 $\Delta SIZE$, $\Delta INVREC$, $\Delta ISSUE$, ΔLIQ , ΔLEV , ΔROA , ΔGRW , $\Delta LARGE$ 및 $\Delta FORN$ 은 t-1년도 자료에서 t-3년도 자료에서 차감한 변동분으로 측정한다.¹⁵⁾

<표 7>의 결과를 살펴보면, IFRS 도입이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의 변동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사시간당 감사보수의 감소에도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살펴본 결과와 일관되게 IFRS 도입 이후 감사인과 감사대상회사 간의 의견불일치 가능성 증가, 감사위험의 증가 등으로 감사시간과 감사보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 1과 가설 2를 지지하는 것이다. 감사시간당 감사보수가 IFRS 도입 이후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 3의 경우 앞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⁶⁾

나. 물가상승률의 고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IFRS 도입 이후 감사보수가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물가상승으로 인한 감사보수의 증가가 연구결과를 왜곡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물가수준을 통제한 상황에서 IFRS 도입으로 인해 감사보수가 증가하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IFRS 도입 이후인 2011년의 감사보수를 IFRS 도입 이전인 2010년의 물가수준으로 조정된 후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감사보수뿐만 아니라 선행연구에서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기업의 총자산에 대해서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분석을 수행한다.¹⁷⁾

<표 7> IFRS의 도입이 $\Delta AHOUR$ 와 $\Delta AFEE$ 및 $\Delta UFEE$ 에 미치는 영향(n=1,053)

종속변수		$\Delta AHOUR$			$\Delta AFEE$			$\Delta UFEE$		
독립변수	기대부호	계수	t-값	p-값	계수	t-값	p-값	계수	t-값	p-값
절편		-0.045	-2.03**	0.0422	-0.013	-0.70	0.4838	0.023	0.89	0.3726
IFRS	+	0.219	15.09***	<.0001	0.111	9.49***	<.0001	-0.113	-6.92***	<.0001

15) 감사계약단계에서 감사보수가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무자료로 측정된 독립변수의 경우 t-1년도와 t-3년도의 차이로 변수를 측정한다.

16) 차이분석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2009년과 2007년의 변동 대신에 2008년과 2006년의 변동 및 2007년과 2005년의 변동을 사용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한 결과 <표 7>의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7)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0년의 소비자물가지수를 100으로 보았을 때, 2009년과 2011년의 소비자물가지수는 각각 97.129와 104로 나타났다. 각 연도의 소비자물가지수로 2009년과 2011년의 감사보수와 총자산을 나누고 100을 곱하게 되면 각 연도의 감사보수와 총자산을 2010년의 물가수준으로 표준화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은행이 공시한 소비자물가지수 원자료를 적용하여 물가수준을 통제한다.

$\Delta SIZE$	+	0.100	4.05***	<.0001	0.133	6.88***	<.0001	0.062	2.31**	0.0210
$\Delta CONFM$	+	0.043	3.99***	<.0001	0.035	3.98***	<.0001	-0.008	-0.68	0.4970
$\Delta INVREC$	+	0.029	0.57	0.5689	0.082	2.09**	0.037	0.044	0.81	0.4198
$\Delta ISSUE$	+	0.001	0.02	0.9850	-0.079	-2.22**	0.0264	0.004	0.07	0.9407
ΔLIQ	-	-0.001	-0.37	0.7133	0.001	1.17	0.2419	0.001	1.02	0.3089
ΔLEV	+	0.003	0.04	0.9690	0.101	2.62***	0.009	0.020	0.38	0.7046
ΔROA	-	-0.007	-0.18	0.8580	-0.016	-0.64	0.5245	0.006	0.16	0.8731
$LOSS$	+	0.003	0.18	0.8564	-0.028	-1.91*	0.0564	0.008	0.38	0.7016
ΔGRW	+	-0.019	-1.55	0.1216	-0.007	-0.79	0.4283	0.000	0.04	0.9711
$BIG4$	+	0.033	2.10**	0.0357	0.007	0.55	0.5837	-0.024	-1.35	0.1758
$FIRST$	+/-	-0.014	-0.72	0.4738	-0.067	-4.42***	<.0001	-0.058	-2.74***	0.0062
$\Delta LARGE$	-	0.121	1.33	0.1829	-0.077	-1.04	0.2968	-0.204	-2.00**	0.0461
$\Delta FORN$	+	-0.086	-0.60	0.5491	-0.107	-0.93	0.3532	0.018	0.11	0.9113
$MARKET$	+	-0.016	-1.03	0.3041	0.011	0.86	0.86	0.027	1.51	0.1303
산업더미			포함			포함			포함	
수정 R ²			0.216			0.170			0.067	

1)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2) FIRST는 종속변수가 $\Delta AHOUR$ 일 경우 양(+), $\Delta AFEE$ 와 $\Delta UFEE$ 일 경우 음(-)의 부호가 기대됨.

3) Δ 는 t년도와 t-2년도의 차이를 의미하며, 변수설명은 <표 2>와 같음.

<표 8>의 결과를 살펴보면 감사시간의 경우 IFRS의 회귀계수가 유의한 양(+)의 값을 보임으로써 IFRS 도입 이후 감사시간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감사보수의 경우 IFRS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계수를 보이고 있다. <표 8>의 결과는 물가상승률을 통제할 경우 감사보수는 IFRS의 도입 이후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종속변수가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감사시간당 감사보수인 경우 IFRS의 회귀계수가 유의한 음(-)의 값을 보이고 있다.

<표 5>와 <표 8>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IFRS의 도입으로 감사보수가 증가하였으나, 감사보수의 증가폭은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¹⁸⁾ 즉, IFRS의 도입으로 인해 감사인이 감사업무에 추가적인 감사시간을 투입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상은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원인은 선행연구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감사인 간의 경쟁심화로 인해 감사인이 감사투입시간 대비 감사보수를 청구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인 간의 경쟁심화로 인해 IFRS의 도입에 따른 감사업무의 확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

18) 감사보수와 감사시간당 감사보수에만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경우에도 <표 8>의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출액 성장률을 측정 후 수행한 분석결과도 <표 8>의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IFRS의 도입으로 인한 감사보수의 증가가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IFRS 도입 이후 감사인이 투입한 감사 시간 대비 감사보수가 낮다는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¹⁹⁾

<표 8> 물가상승률을 통제한 민감도 분석결과(n=1,053)

종속변수		AHOURL			L_AFEE			L_UFEE		
독립변수	기대부호	계수	t-값	p-값	계수	t-값	p-값	계수	t-값	p-값
절편		-3.693	-15.16***	<.0001	7.278	30.26***	<.0001	10.917	45.55***	<.0001
IFRS	+	0.189	9.45***	<.0001	0.009	0.44	0.6569	-0.185	-9.45***	<.0001
L_SIZE	+	0.401	44.05***	<.0001	0.420	46.92***	<.0001	0.020	2.20**	0.0282
CONFIRM	+	0.022	1.45	0.1470	0.020	1.36	0.1727	0.003	0.20	0.8377
INVREC	+	-0.148	-2.55**	0.0109	-0.003	-0.06	0.9558	0.135	2.39**	0.0169
ISSUE	+	0.411	5.71***	<.0001	0.344	4.65***	<.0001	-0.073	-0.99	0.3240
LIQ	-	-0.004	-1.32	0.1857	-0.009	-3.07***	0.0022	-0.002	-0.79	0.4301
LEV	+	0.138	2.13**	0.0335	0.164	2.63***	0.0088	0.033	0.53	0.5970
ROA	-	-0.111	-0.97	0.3334	-0.220	-1.98**	0.0476	-0.095	-0.86	0.3915
LOSS	+	0.050	1.57	0.1159	-0.032	-1.01	0.3103	-0.002	-0.05	0.9562
GRW	+	-0.021	-0.73	0.4667	-0.009	-0.35	0.7236	-0.000	-0.01	0.9946
BIG4	+	0.142	6.17***	<.0001	0.041	1.81*	0.0708	-0.095	-4.19***	<.0001
FIRST	+(-)	0.037	1.41	0.1581	-0.024	-0.91	0.3604	-0.074	-2.88***	0.0041
LARGE	-	-0.209	-3.23***	0.0013	-0.229	-3.59***	0.0003	-0.023	-0.36	0.7167
FORN	+	0.302	2.89***	0.0039	0.277	2.69***	0.0072	-0.009	-0.08	0.9332
MARKET	+	0.014	0.56	0.5756	0.046	1.90*	0.0579	0.031	1.28	0.2005
산업더미		포함			포함			포함		
수정 R ²		0.809			0.811			0.115		

- 1)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 2) FIRST는 종속변수가 AHOURL일 경우 양(+), AFEE와 UFEE일 경우 음(-)의 부호가 기대됨.
- 3) 아래의 변수를 제외한 변수설명명은 <표 2>와 같음.
 L_AFEE :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감사보수의 자연로그 값
 L_UFEE :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감사시간당 감사보수의 자연로그 값
 L_SIZE :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감사대상회사 총자산의 자연로그 값

V. 결론

IFRS는 회계처리의 일반원칙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일반원칙과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여 감사대상회사가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서, 구체적인 회계

19) <표 4>부터 <표 8>까지의 결과에서 독립변수의 분산팽창지수(VIF)의 최대값은 3.081이기 때문에 다중공선성 문제는 심각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모호한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규정의 일부인 세부지침을 제시하였던 규정중심의 과거 기업회계기준과 구별된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IFRS 환경에서는 감사인이 감사대상회사가 수행한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더욱 많은 전문가적 회계지식을 활용해야 하고 감사대상회사의 경제적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감사투입시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IFRS가 도입되기 이전과 도입 이후 연도인 2009년과 2011년의 감사시간과 감사보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2010년의 경우 IFRS 도입 이전기간에 속하지만 IFRS 도입으로 인한 변환효과를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등 IFRS 도입효과가 혼재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분석결과 IFRS 도입 이후에 감사시간과 감사보수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감사시간당 감사보수는 IFRS 도입 이후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감사시간과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당 감사보수의 차이금액을 이용하여 분석한 경우에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그러나 물가상승률을 통제한 분석에서 감사보수는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IFRS의 도입 이후 감사보수의 증가폭이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규정중심의 기업회계기준에 비하여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인 IFRS가 도입되면서 감사대상회사의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감사인과 감사대상회사 사이에 의견불일치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또한 감사대상회사의 회계처리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범위가 확대되었다. 원칙중심의 회계기준 하에서는 감사대상회사의 경제적 실질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회계처리방법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회계처리방법의 선택범위가 넓어지고 감사대상회사의 이익조정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원인으로 인하여 감사인이 감사업무에 투입해야 하는 감사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시간의 증가는 감사원가의 증가를 초래하므로 감사보수를 증가시킨다. IFRS의 도입은 전체 상장기업에 동시에 적용되는 사건이므로 감사인 간의 경쟁효과가 상당부분 배제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물가상승률을 통제할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사보수의 증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즉, IFRS의 도입으로 인한 감사보수의 증가는 물가상승률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감사인 간의 경쟁으로 인해 적절한 감사보수의 청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에 비추어볼 때 감사인 간의 경쟁이 보다 심화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감사시간당 감사보수는 IFRS의 도입 이후 낮아졌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의 선행연구는 감사대상회사의 개별적인 특성이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는 회계기준의 변경이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또한 본 연구는 미국, 일본 등 경제선진국 보다 앞서 IFRS를 도입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분석함으로써 원칙중심의 IFRS가 감사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공헌점을 가진다. 특히 선행연구들이 IFRS 도입 효과를 자본시장 관점에서 살펴본 것과 달리 본 연구는 감사인 관점에서 IFRS의 도입 효과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감사인, 감사대상회사, 감독기관 등에게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회계기준 변경이 감사보수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감사인, 감사대상회사, 감독기관 등에게 감사인 간의 경쟁심화로 인해 감사품질의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업보고서에 공시되는 감사시간의 경우 신뢰성에 대한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신중히 판단하여 표본을 선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표본의 선정에 있어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둘째, IFRS의 도입 효과를 살펴봄에 있어 2009년과 2011년의 표본만을 선정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IFRS의 도입 이후 1개 연도만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결과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2011년 감사보수의 통제변수로 과거 기업회계기준 하에서 작성된 2010년 재무자료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즉, 감사보수 모형에서 회계기준의 변경효과를 반영한 통제변수를 설정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의 해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참고 문헌 】

- 강내철, “소송위험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비재무적 접근”, 「회계정보연구」 제26권 제2호, 2008, pp.133-151.
- 강선민·황인태, “IFRS 도입과 재평가제도”, 「회계와 감사연구」 제53권 제1호, 2011, pp.73-107.
- 권수영·김문철, “감사보수의 결정요인과 감사보수체계 변화로 인한 효과분석”, 「회계학연구」 제26권 제2호, 2001, pp.115-143.
- 권수영·김문철·정태진, “감사시간과 감사품질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30권 제4호, 2005, pp.47-76.
- 김정옥·배길수, “기업의 특성이 회계보수성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31권 제1호, 2006, pp.69-96.
- 박범진, “대주주지분율과 관련된 소유구조가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회계정보연구」 제30권 제1호, 2012, pp.1-28.
- 박종성·김성환·조은혜, “감사인 교체와 초도감사 보수할인에 관한 연구”, 「세무와 회계저널」 제11권 제2호, 2010, pp.103-132.
- 박종일·박찬웅, “비정상 감사보수와 감사품질이 비정상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 「회계와 감사연구」 제45호, 2007, pp.119-159.
- 우용상·이호영, “보수주의와 감사보수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회계와 감사연구」 제46호, 2007, pp.99-134.
- 이경태·손성규·최종원, “소송위험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회계저널」 제16권 제1호, 2007, pp.53-79.
- 이명곤·이세철·장석진, “회계처리의 보수성: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와의 관련성”, 「대한경영학회지」 제22권 제4호, 2009, pp.1961-1989.
- 이명곤·이세철·장석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이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 회계저널」 제9권 제2호, 2008, pp.73-104.
- 이상철·박재완·정갑수, “초도감사의 감사보수 할인 현상에 대한 실증연구”, 「회계와 감사연구」 제53권 제2호, 2011, pp.501-534.
- 이우재·오광욱·정석우,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비용과 기업특성”, 「회계저널」 제20권 제3호, 2011, pp.297-327.
- 이효익, 「회계감사론」 제8판, 신영사, 2005.
- 임석식·김경태·이영한, “K-IFRS 적용의 실무적 문제점과 대책”, 「회계저널」 제18권 제4호, 2009, pp.127-159.

- 정영기, “국제회계기준 조기적용기업의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관한 연구”, 「국제회계연구」 제41집, 2012, pp.293-322.
- 최 관 · 주인기, “외부감사보수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피감사회사의 특성별 분석과 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회계저널」 제7권 제1호, 1998, pp.61-86.
- Bell, T. and J. Griffin, “Commentary on Auditing High-Uncertainty Fair Value Estimates”,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Vol. 31 No. 1, 2012, pp.147-155.
- Bell, T., W. Landsman, and D. Shackelford, “Auditors' Perceived Business Risk and Audit Fees: Analysis and Evidenc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Vol. 39 No. 1, 2001, pp.35-43.
- Blankley, A. I., D. N. Hurtt, and J. E. MacGregor, “Abnormal Audit Fees and Restatements”,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Vol. 31 No. 1, 2012, pp.79-96.
- Chan, D., “Low-balling and Efficiency in a Two-period Specialization Model of Auditing Competition”,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Vol. 16 No. 4, 1999, pp.609-642.
- Craswell, A., J. Francis, and S. Taylor, “Auditor Brand Name Reputations and Industry Specialization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 20 No. 3, 1995, pp.297-322.
- DeAngelo, L., “Auditor Independence, Low Balling, and Disclosure Regulation”,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 3 No. 2, 1981, pp.113-127.
- Francis, J. R., “The Effect of Audit Firm Size on Audit Price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 6 No. 2, 1984, pp.133-151.
- Ghoch, A. and R. Pawlewicz, “The Impact of Regulation on Auditor Fees: Evidence from the Sarbanes-Oxley Act”,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Vol. 28 No. 2, 2009, pp.171-197.
- Goncharov, I., E. J. Riedl, and T. Sellhorn, “Fair Value and Audit Fees”, *Working Paper*, 2011.
- Griffin, P. A., D. H. Lont, and Y. Sun, “Governance Regulatory Change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Adoption, and New Zealand Audit and Non-Audit Fees: Empirical Evidence”, *Accounting and Finance* Vol. 49, 2009, pp.697-724.
- Koonce, L., K. Nelson, and C. Shakespeare, “Judging the Relevance of Fair Value for Financial Instruments”, *The Accounting Review* Vol. 86 No. 6, 2011, pp.2075-2098.
- Niemi, L., “Audit Effort and Fees under Concentrated Client Ownership: Evidence from

- Four International Audit Firm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ccounting* Vol. 40 No. 4, 2005, pp.303-323.
- Palmrose, Z., “The Relation of Audit Contract Type to Audit Fees and Hours”, *The Accounting Review* Vol. 64 No. 3, 1989, pp.488-499.
- Simunic, D. A., “The Pricing of Audit Services: Theory and Evidenc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Vol. 18 No. 1, 1980, pp.161-190.
- Stanley, J. D., “Is the Audit Fee Disclosure a Leading Indicator of Clients' Business Risk?”,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Vol. 30 No. 3, 2011, pp.157-179.
- Vieru, M. and H. J. Schadewitz, “Impact of IFRS Transition on Audit and Non-Audit Fees: Evidence from Small and Medium-Sized Listed Companies in Finland”, *The Finnish Journal of Business Economics* Vol. 1, 2010, pp.11-41.

The Adop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IFRS), Audit Hours and Audit Fees

Myung-Gon Lee* / Seok-Jin Chang** / Sang-Min Cho***

ABSTRACT

As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have been adopted in Korea in full scale, this study analyzes whether auditors of Korea's listed companies allocate additional audit hours and request additional fees for such audits. Since the adoption of the IFRS, client firms can choose from a wider range of accounting processes and manage their earnings more effectively, compared with the previous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Range of accounting choices is wider and likelihood of earnings management is higher with the adoption of the IFRS. Therefore auditors allocate additional audit hours and request additional fees for the reliability of financial statements.

To test the hypothesis, data on firms listed on the Korean Stock Exchange and the KOSDAQ in 2009(before the adoption of the IFRS) and 2011(after the adoption of the IFRS) were used as the samples. To minimize the effect of the early adoption of the IFRS on the study result, data for 2010 were not analyzed. If there were increases in the audit hours and fees between 2009 and 2011,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hypothesis is being supported.

The result of analysis shows that auditors spend more time in auditing since the IFRS was adopted in Korea. This is because client firms can choose from a wider range of accounting methods and their demand for the specialized knowledge from auditors have increased, which have resulted from the shift from rule-based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to the principles-based IFRS. The IFRS resulted in an increase in the audit fees as well as the audit hours. However, it was discovered that the adoption of the IFRS had no effect on the audit fees considering the inflation rate. In other words, it can be identified that auditors spend extra audit hours but do not receive remuneration. In the same context, it was found that audit fees per hour experienced a fall since the IFRS was adopted. Same results were obtained in analyses which used change variables of audit hours, fees, and audit fees per hour.

The insignificant effect of the IFRS adoption on audit fees means that competition between auditors has become fierce since the adoption of the free audit engagement system. Also, the decrease in audit

*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Hanyang University(Primary author), E-mail : leemg@hanyang.ac.kr

** Master and Ph.D. candidate, Department of Accounting, Hanyang University(Corresponding author), E-mail : seokjin3@hanyang.ac.kr

*** Ph.D. candidate, Department of Accounting, Hanyang University and Shinwoo Accounting Co. CPA (Co-author), E-mail : chosmcpa@yahoo.co.kr

fees per hour since the adoption of the IFRS implies that requests for audit fee increase are not properly accepted although the accounting standard changes resulted in increases in audit hours. In other words, because of the fierce competition among auditors, the increase in audit hours could not lead to increases in audit fees.

While previous studies analyzed the effects of client firms' individual characteristics on audit hours and fees,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accounting standard changes on audit hours and fees. Moreover, by analyzing the circumstances of Korea which adopted the IFRS before the economically developed nations such as the US and Japan, this study suggests empirical evidence on how the principles-based IFRS affects the audit environment. In particular, while previous studies only examined the IFRS' effects from the perspective of capital markets, this study analyzed these effects from the perspective of auditors. This will provide great implications for auditors, client firms and supervisory institutions.

Key Words :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Audit Hours, Audit Fee, Audit Fees per Hour